
조세

1 공약 개요

1.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환경 및 보호장치 마련
2.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주식양도소득세 폐지)
3. 중견기업의 세제 지원 강화
4. 국내 복귀 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5. 부동산세제 정상화(부동산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수준과 변동폭 조정 :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추진)

2 구체적 분석(또는 법률적 쟁점)

1.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환경 및 보호장치 마련
 -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등의 내용 포함)
2.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

3. 중견기업의 세제 지원 강화

- 우수 인재가 벤처기업으로 유입되도록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 상향(2억원)
-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하여 벤처기업 상장 유인(비과세, 행사이익 세금분할 납부, 양도시점 과세 이연 등, 특례 적용을 비상장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서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으로 확대)
-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사후관리 의무기간, 사후요건 등을 완화(업종 변경 제한 폐지 및 사후관리 기한 현행 7년보다 단축)
- 중소기업의 계획적 승계지원을 위한 사전증여제도 개선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디지털전환 투자세제 지원 확대(공장자동화, E-커머스 위한 물류설비 자동화,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전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비대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을 확대, 이동근무, 화상 회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필수 기기 구입시 세제지원으로 확대(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사업 및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 지원확대)

4. 국내 복귀 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 (현행) 국외 사업장 양도·폐쇄 후 2년 내 → 3년 내 국내사업장 신·증설시 세제 지원

5. 부동산 세제관련

부동산공시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 투명하게 공개 -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중앙정부 공시가격 상호검증
종합부동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 150% → 50%, (조정지역 2주택자, 3주택자, 법인) 300% → 200%로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 허용 -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양도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적 배제하고 부동산세 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취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보장 위해 세율 1~3%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 -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의 단일세율 적용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과세 완화
등록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매입임대형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 부여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6. 기부 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5% 추가 상향

(1천만원 이하) 15% → 20%

(1천만원 초과) 30% → 35%

3

향후 전망(또는 대응 방향)

- 현재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투자자와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대주주 등에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고, 2023. 1. 1.부터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이 5천만 원을 넘으면 대

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최대 25%가 세금으로 부과될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2023. 1. 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2장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부분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중견기업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를,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사후관리 의무기간, 사후요건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등을 중심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세제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전제하에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합하여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2%로 낮추고, 1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합산세액이 직전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며, 조정지역의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300%에서 200%로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위 부동산 공약을 구체화할 전담 기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에 TF(태스크포스)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인수위 경제 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 1분과 전문 실무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공급, 주거 복지 등과 관련된 중점 과제를 검토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조율할 예정입니다.

▣ 담당변호사



변호사 최주영

 02-3479-5766

 jooyoung.choi@barunlaw.com



변호사 김지은

 02-3479-2411

 jjeun.kim@barunlaw.com